

G-Welfare Weekly Report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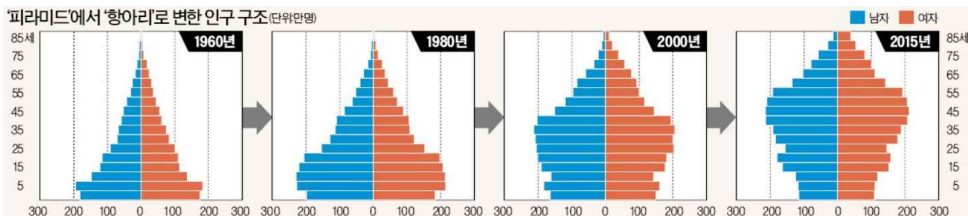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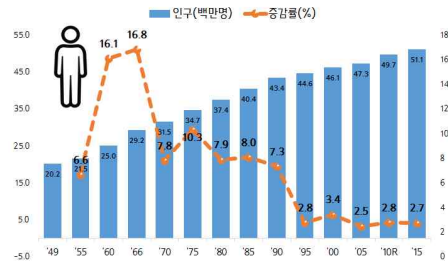
중앙정부 정책동향

1.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경기도 인구 7.1% 증가

01 주요 내용

- 통계청이 발표(2016. 9.7.)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5년 11월 1일 기준 5,107만 명으로 2010년 4,971만 명에 비해 2.7% 증가
- 성별로는 남자 2,561만 명, 여자 2,546만 명으로 2010년에 비해 남자는 2.7%, 여자는 2.8% 증가하였고, 내국인 4,971만 명, 외국인은 136만 명(2.7%)
-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전체 인구의 24.4% (1,248만 명)로 가장 많고, 서울(19.4%), 부산(6.8%), 경남(6.5%) 순이며,
 - 시군구별로는 경기 수원시 119만 명, 경남 창원시 106만 명, 경기 고양시 99만 명 순임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는 2,52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9.5%를 차지하며, 2010년 49.2%에 비해 0.3%p 증가
- 시도별 인구 증감율을 보면, 제주(9.9%), 경기(7.1%), 인천(6.1%) 등은 증가한 반면, 서울(-1.6%), 부산(-1.1%), 대구(-1.0%) 등은 감소하였음
- 연령별 인구구조를 보면 450대 인구가 가장 많으며, 유소년 인구는 13.9%(691만 명)로 2010년 16.3%(788만 명)에 비해 2.3%p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13.2%(657만 명)로 2010년 11.0%(536만 명)에 비해 2.2%p가 증가함에 따라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를 나타냄

*내용 및 일부 그림은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보도자료'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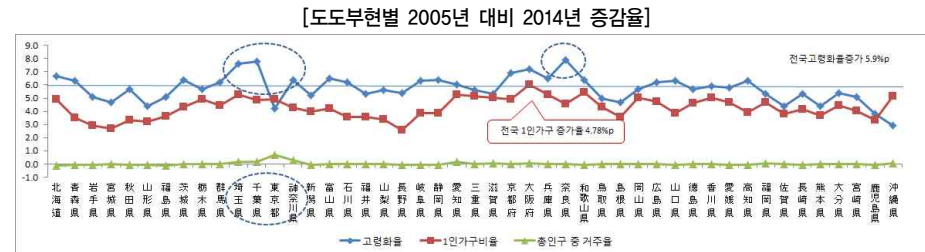
- 모든 시도의 노인인구비율이 7%가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전남(21.1%)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 시군구별로 보면, 전남 고흥군(38.5%)이 고령화율이 가장 높고, 경북 의성군(38.2%), 경북 군위군(37.5%) 순으로 높고 경기도는 10.7%임
 - 울산 북구(6.4%)와 대전 유성구(6.9%)만이 노인인구비율이 7% 이하



- 총 가구는 1,956만 가구로 2010년 1,786만 가구에 비해 8.9% 증가하였고, 전체 가구 중 48.7%(952만 가구)가 수도권에 거주하며, 2010년(875만 가구)에 비해 8.8% 증가
- 평균 가구원 수는 2.53명으로 2010년 2.68명보다 0.15명 감소하였고, 시도별로 경기(2.69명), 인천(2.65명), 제주(2.61명), 울산(2.61명)순으로 많음
-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7.2%로 2010년(24.6%)이후 주된 가구 유형으로 등장함.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주된 가구 유형은 4인 가구였음
 - 시도별로 보면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31.2%)이고, 인천(23.3%)이 가장 낮음



- 상구조사결과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의 고령화 심화'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현상이 겹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상실 위험에 처해있다는 연구보고**가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20~39세 가임여성 인구 비중'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간 상대비가 0.5 이하일 경우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하는데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경북 의성군, 전남 고흥군, 경기 연천, 양평, 가평 등 77개 지역이 30년 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
-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지방소멸의 위험은 더 커서 15년 후인 2040년대에 현재 1,700개 정도인 시정촌의 절반 이상이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고, 20년 내 1,000개의 시정촌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
 - 일본의 인구 변화를 보면 '14년 현재 12,708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0.17%감소하였지만, 전국 인구의 28.8%가 동경도를 포함한 주변의 가나가와현·사이다마현·치바현에 거주하여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 노인인구 비율은 2005년 20.1%에서 2014년 26.0%로 10년 새 6%p 증가하였고, 나라현·사이다마현·치바현 등 주거비용이 적게 드는 대도시 주변지역의 증가폭이 컸음
 - 전체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기준 32.4%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동경도·오사카부·교토부·후쿠오카현·홋카이도와 같이 규모가 큰 도시화지역에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남



02 경기도 시사점

-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고령화율이나 1인가구 비율 등이 가장 낮아 젊은 지역에 속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멸위험지역이 3개나 포함되어 불균형적인 인구분포를 개선하는 인구정책 추진이 필요
 - 고령화로 인해 인구 재생산의 잠재력이 저하된 지역에 '젊은 여성' 까지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 지역은 유지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젊은 여성이 정착하고 생활하기에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도차원의 노력이 필요

*2010R과 2015R 자료는 등록센서스 방식의 집계 결과이며, 2005년 이전의 자료는 전통적 현장조사방식의 집계결과임

**이상호(2016) '지역고용동향 심층분석-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2016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발표 자료

***가타야마 요시히로(2016),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생존 전략』, 『2016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기조연설 자료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도내 20개 시군 생활임금제 도입

지난 달 31일 경기도가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 원 달성'을 제안한 가운데 도내 시군별로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및 시행 지역이 대폭 확대

- '생활임금(living wage)'은 실질물가와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의 실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
 - 최저임금이 국가가 규정한 근로 임금 하한선(강제조항)인 것이 비해 생활임금은 실질적 생계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대부분 지자체 중심
 - 우리나라 생활임금 도입은 경기 부천시와 같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서울 노원구·성북구와 같이 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구분
- 현재까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전국 69개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는 총 21곳(30.4%)이 해당하며,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7,910원으로 결정
 - 도내 시군별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된 곳은 총 20곳, 제정을 추진 중인 곳은 7곳(5곳은 입법예고 중), 나머지 4곳은 미제정*
 - 임금수준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 8천원 이상은 2곳, 7천원 이상은 11곳이며 최고수준(광주 8,410원)과 최저수준(이천 6,360원) 간 약 2천원의 차이 존재

〈표 1〉 생활임금 조례 제정현황 및 생활임금 수준

지역	제정여부	제정일	생활임금(원)	지역	제정여부	제정일	생활임금(원)
경기	제정	15.08.30	7,910	안양	제정	16.07.29	7,480
고양	제정	16.06.17	7,630	시흥	제정	15.09.30	7,290
의정부	미제정(추진중)	-	-	광명	제정	15.09.30	6,600
파주	미제정	-	-	군포	제정	16.04.06	7,480
김포	제정	15.06.10	7,250	수원	제정	15.10.08	7,140
양주	미제정	-	-	화성	제정	15.06.10	7,260
포천	제정	16.08.31	-	평택	미제정	-	-
동두천	미제정(추진중)	-	-	오산	추진중(입법예고)	-	-
연천	제정	16.07.08	-	의왕	제정	15.10.30	6,970
남양주	미제정	-	-	과천	추진중(입법예고)	-	7,910
구리	제정	15.12.14	7,230	성남	제정	15.07.27	8,000
하남	미제정(추진중)	-	-	용인	미제정(추진중)	-	-
양평	제정	16.07.08	6,600	광주	추진중(입법예고)	-	8,410
가평	제정	16.03.16	6,996	이천	제정	14.12.31	6,360
부천	제정	13.12.12	7,250	안성	제정	16.01.08	-
안산	제정	15.11.23	7,370	여주	제정	16.01.13	7,250

- 경기도는 2기 연정 합의문에 '생활임금제 정착 및 확대'를 포함하고, 올해부터 생활임금제를 시군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최근까지 주도적 의지 표명
 -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 확대는 임금액 인상('19년까지 1만원)과 적용범위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함
- 생활임금을 통한 임금인상이 일차적으로 저소득·소득불평등 완화에 그치지 않고 저성장·저소비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직능단체 주요행사 안내

사업명	주요내용
2016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한마음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9. 29.~30.(1박2일) • 장 소 : 인천시 소재 영종스카이라이프 • 주 관 :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 대 상 :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250명

*지난 '13년 12월 부천시가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기도도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난 '14년 7월에 조례 제정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한정된 대상은 '도 사무를 위탁 받거나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까지로 확대 적용

03 FACT CHECK

내 안전은 내가 챙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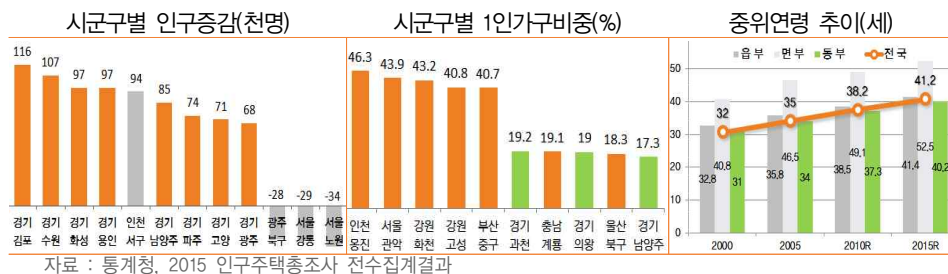
- 지난 12일 경주에서 규모 5.8강진에 이어 19일 규모 4.5, 21일 규모 3.5 등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능장대응에 실망한 시민들이 지진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처하고 있음*
 - 21일 지진경보가 기상청보다 56분 빨랐던 '지진희알림', 커뮤니티매핑센터가 만든 '지진 정보 공유지도', '생존배낭' 꾸리는 법, '일본 도쿄도 방재 책자 한글어판' 공유 등
- 한편 2011년에 진도 5이상의 지진이 781회 발생, 그 이전에도 진도3이상의 지진이 연간 약 5,000회 발생한** 일본에서는 내각부에 지진방재대응 컨트롤타워를 두고 대응
 - 2013년 8월 내각부는 「지방도시 등에 있어서 지진대응의 가이드라인」 제공
 - 가이드라인에는 재해발생 시 지자체가 해야 할 항목을 재해대응의 각 단계(준비, 초동(발생당일), 응급(1~3일, 3일~1주일), 복구(1주일 후))에 따라 17개 체크리스트(피해복구, 자원봉사 협업, 폐기물처리 등)로 정리하고,
 - 2014년 「대규모지진방재·감재(減災)대책 대강령」을 발표하여 권역별로 분리되어있던 대응 강령을 하나의 틀로 정리
- 지진피해 가능성이 커진 만큼 추후의 재해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이고 유용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이나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와 함께 지진발생 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행동매뉴얼, 지진맵, 실시간 알림문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

*국제신문 (2016.9.21.일자 기사), 정부답답 해...자체대응나선 네티즌

**2011년은 동일 본대지진이 발생한 해(일본국토교통성기상청 발표)

04 통계로 보는 복지

2015 인구주택총조사 주요 통계



- 2010년 대비 인구증가가 가장 많았던 상위 15개 시군구에 경기도 소재 9개 시군구가 포함 되어, 최근 경기도의 인구증가 추세를 반영
 - 반면 가장 인구가 많이 감소한 곳은 서울 노원구(34천명), 서울 강동구(29천명), 광주 북구 (28천명) 등임
- 1인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난 지역은 대부분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군부 지역이나, 고시촌 이 형성된 서울 관악구의 경우 청년층이 1인가구 비중에 영향
- 2015년 중위연령은 41.2세로 40대를 돌파하였고, 지역별로는 동부 < 읍부 < 면부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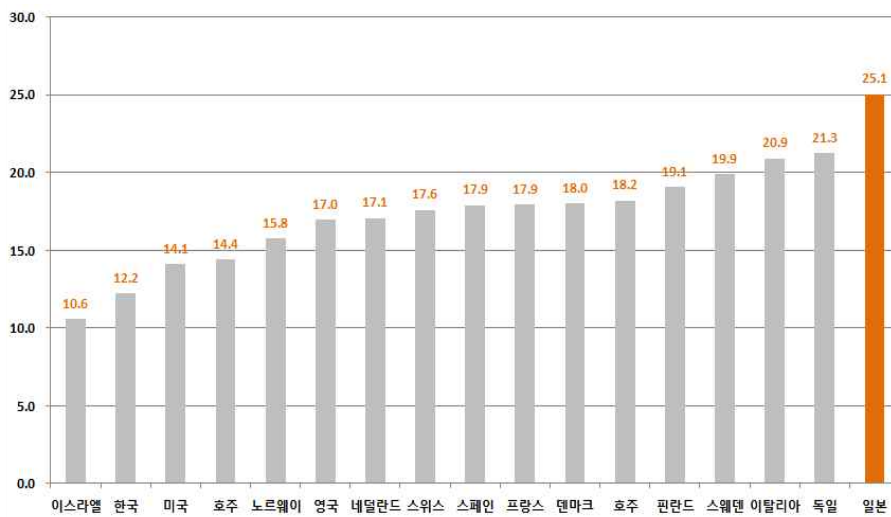
05 해외동향

고령화에 따른 해외 연금 정책의 변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고 있어 이에 해외 복지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와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한 노력이 뒤따르고 있음
 - 전체 인구 중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5.1%로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이며 복지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스웨덴과 덴마크도 각각 19.9%와 18.0%의 비교적 높은 고령화율을 나타내고 있음

〈2013년 OECD 회원국 고령인구 비율〉



*단위: %

자료 : OECD,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2013년)

- 덴마크는 수년간 지속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자 경제개혁안 『더 강한 덴마크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연금수급 연령을 조정
 - 8월 말 덴마크 정부가 발표한 경제개혁안은 복지, 노동, 난민, 교육 등의 7개 영역을 포함하며 소득세율을 낮추고 연금수급 연령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
 - 과도한 복지지출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연금 수급연령을 현행 67세에서 67.5세로 상향 조정, 조기 퇴직 연령도 63세에서 63.5세로 늦출 예정
 - 복지 비용을 축소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2025년까지 650억 크로네를 경기 진작을 위해 투입할 계획
- 고령화가 더 많이 진전된 일본은 2012년 고령법 개정을 통해 65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후생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을 현 62세에서 2025년까지 64세로 상향 조정
 - 정년 의무화 및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의 근거는 고연령자 등의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 (1972년 5월 25일 법률 제68호, 최종 개정 : 2012년 9월)에 있음
 - 목적은 ①고연령자의 안정된 고용 확보, ②재취업 촉진, ③정년퇴직자와 그 외의 고령퇴직자에 대한 취업의 기회 확보를 통한 고연령자 등의 직업의 안정과 복지 증진 도모

〈후생연금(보수비례부분)의 지급개시 연령조정〉

연 도	지급개시 연령
2013년 4월 ~2016년 3월	61세
2016년 4월 ~2019년 3월	62세
2019년 4월 ~2022년 3월	63세
2022년 4월 ~2025년 3월	64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고연령자 고용안정법 Q&A'

〈고령자 고용관련 법과 정년제도 변화〉

연 도	제정 및 개정 내용
1972년	「중고년령자 등의 고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1977년	고연령노동자(55세 이상)의 상시근로자 6%이상고용 의무화 개정
1987년	고연령자 등의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고령법) 개정 정년제일 경우 60세 이하로 하지 않도록 노력 의무
1990년	정년이 된 자를 65세까지 재고용 노력의무화
1994년	60세 정년제 의무화
2000년	정년 상향조정,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 개선 노력의무화(고령법개정)
2004년	계속고용제도 의무화(예외조치 있음)
2012년	고령법 개정으로 65세 정년제 의무화, 계속고용제도 의무화

- 2012년 「고연령자 등의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고령법)」 일부개정이 의미하는 바는
 - 1) 계속 고용제도의 대상을 한정하는 구조 폐지 : 정년제 폐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상향조정 등의 조치를 의무화
 - 2) 계속고용제도 대상기업의 범위 확대 : 관련회사 등 그룹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명문화
 - 3) 의무위반 기업명 공개 :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연령자 고용확보조치 미 실시 기업이 4.3% 이지만, 30인 이하 기업의 경우 실태가 불투명하며 미 실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의 공개와 구인알선소개유보, 조성금 미지급 조치
- 연금 수급자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는 덴마크와 일본 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
 - 지난 6월 스위스에서 연금수령 상향 개혁안 ‘연금 2020’ (수령연령 남 65→67, 여 64→65) 이 나왔으나 반대여론이 많아 여전히 논쟁 중인 상황임
 - 지난 10년간 34개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은퇴연령을 높이거나 완전한 연금 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기여 요건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해 왔으며 많은 국가에서 연금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같은 국가는 이미 67세로 시행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은 65세에서 66세로 상향 조정, 에스토니아, 터키, 헝가리 같은 소수의 국가에서만 65세를 초과하지 않을 예정
 - 네덜란드는 연금수급연령을 2018년까지 66세로, 2021년까지 67세로 올릴 예정
 - 호주는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을 2013년 7월에 65세로 올렸으며, 2023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67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
 - 장기적으로는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연금수급연령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어도 67세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많은 국가들이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상향 조정하려는 과도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2014년 OECD 회원국 연금 수급 연령〉

국가명	남성	여성	국가명	남성	여성
호주	65.0	65.0	한국	65.0	65.0
캐나다	65.0	65.0	일본	65.0	65.0
덴마크	65.0	65.0	네덜란드	65.2	65.2
핀란드	65.0	65.0	뉴질랜드	65.0	65.0
프랑스	61.2	61.2	노르웨이	67.0	67.0
독일	65.3	65.3	스페인	65.2	65.2
아일랜드	66.0	66.0	스웨덴	65.0	65.0
이스라엘	67.0	62.0	스위스	65.0	64.0
이탈리아	66.3	62.3	영국	65.0	62.0
OECD 평균	64.7	63.5	미국	65.0	65.0

*단위: 세